# (주)광림 제4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3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9월 17일(금)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본사 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별첨 2>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중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황태영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별첨 3>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오현철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대성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곽윤성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시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등 의심환자 발생시 부득이하게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장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09월 02일

주식회사 광 림
대표이사 성 석 경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허 인

**<별첨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 전 | 변경 후 | 이 유 |
|---|---|---|
| 제2조 (목적)<br>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br>(생략)<br><신설> | 제2조 (목적)<br>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br>(생략)<br>1. 풍력발전 설비업 및 제조업<br>1. 풍력발전 관련 기술 개발업<br>1. 풍력발전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업<br>1. 풍력발전 전문 유지보수 서비스업<br>1. 풍력발전 기자재 및 부품 판매업<br>1. 소형풍력발전 등 그린 홈 및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대행업<br>1. 풍력발전사업<br>1. 태양광 설비업 및 제조업<br>1. 태양광 관련 기술 개발업<br>1. 태양광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업<br>1. 태양광 전문 유지보수 서비스업<br>1. 태양광 기자재 및 부품 판매업<br>1. 태양광발전사업<br>1. 수소에너지 설비업 및 제조업<br>1.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업<br>1. 수소에너지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업<br>1. 수소에너지 전문 유지보수 서비스업<br>1. 수소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 판매업<br>1. 수소에너지발전사업<br>1. 전기차 및 수소차 파워트레인 제조, 개발, 판매업<br>1.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컨설팅업<br>1.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위탁관리 및 대행업<br>1.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획, 조사, 설계, 운용업<br>1.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센터 운영업<br>1.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설치<br>1. 신재생에너지설비(전력설비, 기계설비) 설치공사업<br>1. 신재생에너지사업<br>1. 플랜트 설비 제작 및 판매<br>1. 에너지 설비 제작 및 판매<br>1.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안전관리 대행업<br>1. 고효율 에너지 사용 기자재 보급사업<br>1. 전기공사업<br>1. 강구조물 공사업<br>1. 종합건설설계 감리업<br>1. 전력판매업<br>1. 토목공사업<br>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 사업 다각화 |

| | | |
|---|---|---|
| | 1. 텔레메틱스업<br>1. 모바일&인터넷서비스업<br>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br>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br>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br>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br>1. 시설, 설비, 기계,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시설대여<br>1. 특정물건의 연불판매<br>1. 할부금융업<br>1. 신기술사업금융업<br>1.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br>1. 어음할인업무<br>1.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br>1. 위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br>1. 지급보증업무<br>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br>1. 위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br>1.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br>1.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br>1.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br>1.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br>1. 화물운송업<br>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br>1. 자동차 정류장 사업<br>1. 여객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 사업<br>1. 관광 및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br>1. 주차장사업<br>1. 창고업(야적장, 보세, 일반)<br>1. 통관업<br>1.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br>1. 전 각호에 부대되는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 |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br>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br>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 |
|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br>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 |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br>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 |

| | | |
|---|---|---|
|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br>②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br>③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야 한다.<br>1.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br>2.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br>3. 본 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 |
| 제35조 (이사의 수)<br>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5조 (이사의 수)<br>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 제36조 (이사의 선임)<br>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br>※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br>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br>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 | 제36조 (이사의 선임 및 해임)<br>① 이사 후보자의 선출은 이사회에 이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br>※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br>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br>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 | |

| | | |
|---|---|---|
| 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 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br>④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해임을 할 수 없다.<br>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
|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r>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br>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r>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br>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br>③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는 경우 제2항의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 이사의 경우 30억 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 |
| <신설>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별첨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중재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관계 | 신규선임여부 |
|---|---|---|---|---|---|---|
| 이중재 | 67.08.30 | 12.05~13.08 (주)광림 대표이사<br>13.08~현재 (주)광림 부사장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규선임 |
| | | | 체납사실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 사유유무 | 비고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황태영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관계 | 신규선임여부 |
|---|---|---|---|---|---|---|
| 황태영 | 68.07.09 | 2018년~ 현재 지역도시마케팅연구원 이사<br>중국과학원<br>2014년~현재 정강디지털콘텐츠연구원<br>응용기술산업추진센터 주한국 대표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규선임 |
| | | | 체납사실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 사유유무 | 비고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별첨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오현철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br>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br>거래내역 | 최대주주<br>와의관계 | 신규선임<br>여부 |
|---|---|---|---|---|---|---|
| 오현철 | 68.06.07 | 98.12 제39회 사법시험 합격<br>00.02 제29기 사업연수원 수료<br>20.09~21.0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br>21.03~현재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규선임 |
| | | | 체납사실<br>여부 | 부실기업<br>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br>사유유무 | 비고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대성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br>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br>거래내역 | 최대주주<br>와의관계 | 신규선임<br>여부 |
|---|---|---|---|---|---|---|
| 이대성 | 61.01.15 | 93년~97년 (주)아르데코 대표<br>현, DS부동산 컨설팅 대표<br>현, S.H 경영연구소 기업컨설팅 회장<br>현, 기륭전기 주식회사 고문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규선임 |
| | | | 체납사실<br>여부 | 부실기업<br>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br>사유유무 | 비고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곽윤석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br>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br>거래내역 | 최대주주<br>와의관계 | 신규선임<br>여부 |
|---|---|---|---|---|---|---|
| 곽윤석 | 66.02.03 | 18.08~20.06 경기도청 홍보기획관<br>21.01~현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규선임 |
| | | | 체납사실<br>여부 | 부실기업<br>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br>사유유무 | 비고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